

대구지방법원 2023. 2. 1 선고 2022가단14655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대한민국

피 고 A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3. 2. 1.

주 문

1.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7 지분에 관하여 2020. 3. 3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 2.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7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20. 3. 3. 접수 제397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